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13.3.23>

자동차종합검사 [□ 대행자 / □ 지정정비사업자] [□ 지정취소 통지서 / □ 업무정지명령서]

업체명:
소재지:
대표자:

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종합검사 [□ 대행자 / □ 지정정비사업자]의

[□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/ □ 업무의 정지를 명합니다.]

1. 처분 사유:

2. 처분 내용:

3. 업무정지 처분기간: 년 월 일부터
년 월 일까지

4. 근거 법령: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특별시장
광역시장 인
도지사
특별자치도지사

귀하는 이 통지서(명령서)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90㎜×268㎜(신문용지 54g/㎡)